

제 호

최초등록일 : 년 월 일

① 자동차등록번호		② 차 종	③ 용 도
④ 차 명		⑤ 형식 및 제작연월	
⑥ 차 대 번 호		⑦ 원동기형식	
⑧ 사 용 본 거 지			
소유자	⑨ 성명(명칭)	⑩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
※ 유의사항 :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⑦번란의 ‘원동기형식’ 은 ‘구동전동기형식’ 을 말합니다.

이
이
이

등록관청명 직인

1. 제 원			
⑪ 제원관리번호 (형식승인번호)			
⑫ 길이	mm	⑬ 너비	mm
⑭ 높이	mm	⑮ 총중량	kg
⑯ 승차정원	명	⑰ 최대적재량	kg
⑱ 배기량 또는 구동축전지 용량	cc, (Ah), [Ah]		
⑲ 정격출력	Ps/rpm, (kW/rpm), [kW/rpm]		
⑳ 기통수 (구동축전지 정격전압)[연료 전지 최고출력]	기통, (V), [kW]		
㉑ 에너지소비율	km/L, (km/kWh), [km/kg]		
㉒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		㉓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	
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			
유의사항 : ⑬~㉑에서 기재 단위는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(),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는 []을 말합니다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. ㉒~㉔는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(외부 전기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구조인 자동차는 제외)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			
2. 등록번호판 교부			
㉕ 구분	㉖ 번호판발급일	㉗ 발급대행자확인	
3. 저당권등록사실(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(을)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)			
㉘ 구분(설정 또는 말소)			㉙ 날짜

[illegible]

주의사항 : ㉔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

비 고

- 자동차 출고(취득)가격(부가가치세 제외):

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

- 사용본거지·성명 등의 변경등록(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.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정정신청, 변경신청,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,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)
 -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·군·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사용본거지·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
-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(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
- 튜닝승인
 -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
- 이전등록
 -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)
 -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,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,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,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 -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말소등록
 - 사유(폐차요청 등) 발생일부터 1개월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) 이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
-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
 -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

자동차등록증

○○시·도

5. 변경등록사항

㉞ 성명	㉟ 등록날짜	㊱ 확인

6. 튜닝사항

㉡ 내용	㉢ 검사날짜	㉣ 검사책임자확인

7. 기타

㉤ 내용	㉥ 날짜	㉦ 확인